

### case 3

## 자동차 에어컨용 증발기 어셈블리

### 요약

사례명	자동차 에어컨용 증발기 어셈블리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판정																										
사례번호	HQ H319601 (2021.07.16.)																										
사실관계	<p>여러 국가에서 제작된 스테이터 코어 및 로터 요크를 중국으로 수입하여 스테이터 어셈블리 및 로터 어셈블리를 생산한 후, 중국 혹은 멕시코에서 최종 제품으로 조립</p> <table border="1"> <thead> <tr> <th>시나리오</th> <th>스테이터 코어 및 로터 요크 생산</th> <th>스테이터 어셈블리 및 로터 어셈블리 생산</th> <th>최종 제품 생산</th> </tr> </thead> <tbody> <tr> <td>1</td> <td>베트남</td> <td>중국</td> <td>멕시코</td> </tr> <tr> <td>2</td> <td>일본</td> <td>중국</td> <td>멕시코</td> </tr> <tr> <td>3</td> <td>한국</td> <td>중국</td> <td>멕시코</td> </tr> <tr> <td>4</td> <td>태국</td> <td>중국</td> <td>멕시코</td> </tr> <tr> <td>5</td> <td>베트남</td> <td>중국</td> <td>중국</td> </tr> </tbody> </table>			시나리오	스테이터 코어 및 로터 요크 생산	스테이터 어셈블리 및 로터 어셈블리 생산	최종 제품 생산	1	베트남	중국	멕시코	2	일본	중국	멕시코	3	한국	중국	멕시코	4	태국	중국	멕시코	5	베트남	중국	중국
시나리오	스테이터 코어 및 로터 요크 생산	스테이터 어셈블리 및 로터 어셈블리 생산	최종 제품 생산																								
1	베트남	중국	멕시코																								
2	일본	중국	멕시코																								
3	한국	중국	멕시코																								
4	태국	중국	멕시코																								
5	베트남	중국	중국																								
쟁점 및 판정	<p>시나리오 1~4</p> <p>①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p> <p>CBP는 최종 제품인 증발기 어셈블리의 원산지는 스테이터 및 로터 어셈블리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는 다시 해당 어셈블리들의 핵심 부품인 스테이터의 코어와 로터의 코어가 생산된 국가를 원산지로 판단하게 되므로, 각 시나리오별로 스테이터의 코어와 로터의 코어를 생산한 국가가 원산지인 것으로 판정함</p> <table border="1"> <thead> <tr> <th>시나리오</th> <th>판정결과</th> <th>제301조 대상 여부</th> </tr> </thead> <tbody> <tr> <td>1</td> <td>베트남산</td> <td rowspan="4">X</td> </tr> <tr> <td>2</td> <td>일본산</td> </tr> <tr> <td>3</td> <td>한국산</td> </tr> <tr> <td>4</td> <td>태국산</td> </tr> </tbody> </table>	시나리오	판정결과	제301조 대상 여부	1	베트남산	X	2	일본산	3	한국산	4	태국산														
	시나리오	판정결과	제301조 대상 여부																								
1	베트남산	X																									
2	일본산																										
3	한국산																										
4	태국산																										
<p>시나리오 5</p> <p>②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p> <p>핵심 부품인 스테이터의 코어와 로터의 코어가 베트남에서 생산되었지만, 중국에서 수행된 가공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대부분의 부품이 중국산이므로, 최종 제품인 증발기 어셈블리의 원산지를 중국으로 판정하여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에 해당</p>																											
근거법령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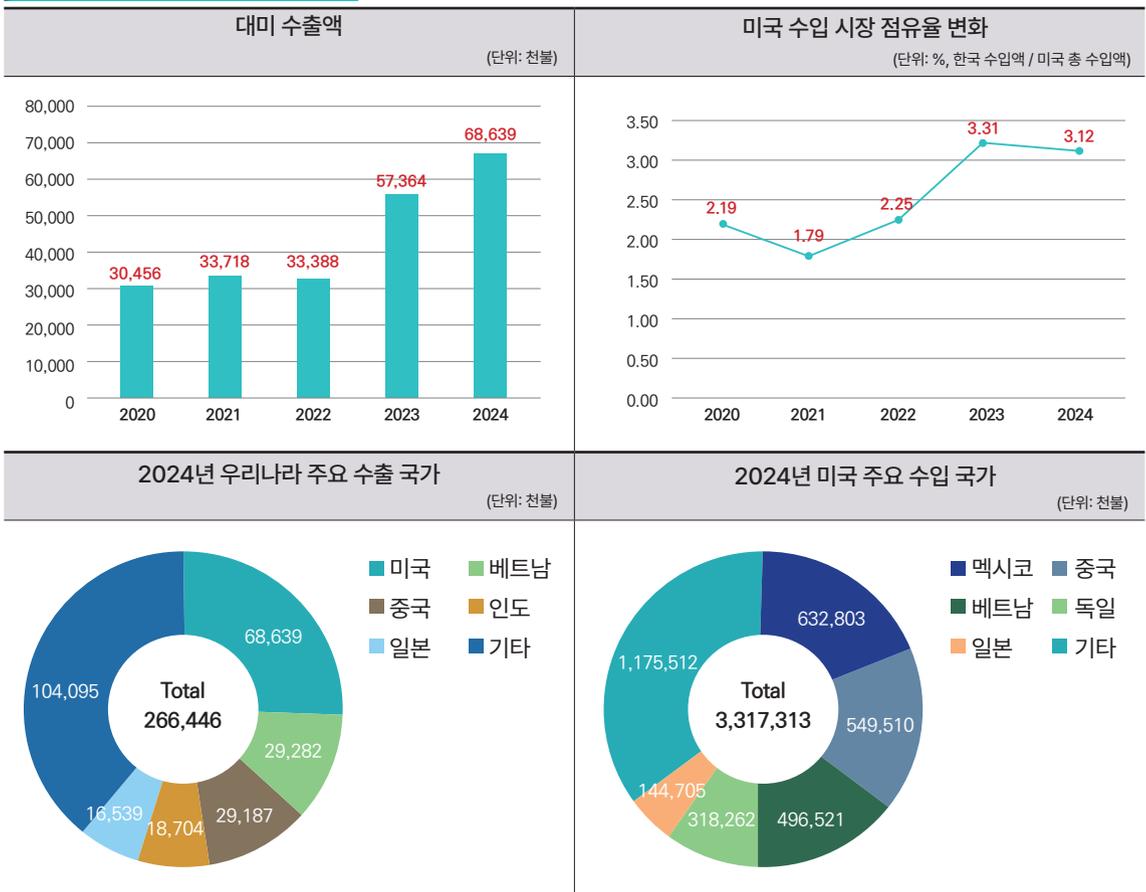
I 품목개요

품목정보

HS Code	제8414.59호	
세율	한국 기본세율	8%
	미국 기본세율	0~2.3%
	한-미 FTA 협정세율	0%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14.90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시장정보

제8414.59호 시장 정보



❖ 자료: K-stat

II 판정사례

**사 례 명** [자동차 에어컨용 증발기 어셈블리]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판정

**사례번호** HQ H319601 (2021.07.16.)

**사실관계**

<b>요청자</b>	Valeo North America (대리인: Crowell & Moring, LLP)
<b>제품명</b>	• 자동차 에어컨용 증발기 어셈블리 (부품 번호: T456490)
<b>구성</b>	• 스테이터 어셈블리, 로터 어셈블리, PWB 어셈블리, 임펠러, 플랜지, 기타 부품 등
<b>용도</b>	• 미국으로 수입된 후 자동차 공조기(HVAC)로 조립될 예정
<b>완제품 HTSUS</b>	• 8414.59.6500

**제조과정**



**상세공정** **시나리오 1**

- 베트남에서 강판을 가공하여 스테이터 코어 및 로터 요크 생산
- 스테이터 코어 및 로터 요크 중국으로 수출
- 중국산 플라스틱 커버, 전기 단자, 마그넷 와이어와 스테이터 코어를 조립하여 스테이터 어셈블리 생산
- 중국산 샤프트, 자석, 스냅 링과 로터 요크를 조립하여 로터 어셈블리 생산
- 스테이터 어셈블리 및 로터 어셈블리를 멕시코로 수출
- 멕시코에서 태국산(볼 베어링), 중국산(PWB 어셈블리, 앤드 스톱퍼, 나사, 알루미늄 커버 등), 멕시코산(임펠러, 플랜지, 모터 홀더) 부품과 로터 어셈블리 및 스테이터 어셈블리를 가공·조립하여 증발기 어셈블리 생산  
- 이때, 용접, 자화, 프레스 가공, 인쇄 회로 기판 제어, 테스트 등의 공정 수행
- 미국 수출

**시나리오 2**

로터 요크 및 스테이터 코어를 일본에서 생산  
(나머지는 시나리오 1과 동일)

**시나리오 3**

로터 요크 및 스테이터 코어를 한국에서 생산  
(나머지는 시나리오 1과 동일)

**시나리오 4**

로터 요크 및 스테이터 코어를 태국에서 생산  
(나머지는 시나리오 1과 동일)

**시나리오 5**

증발기 어셈블리의 조립·생산도 중국에서 수행  
(나머지는 시나리오 1과 동일)

## 쟁점사항

- ✓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관련 법령  
및 분석

1

##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 관련 법령 검토

- ☐ USTR은 『Section 301(b) of the Trade Act of 1974』에 따라 중국산 특정 수입품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바, 제301조 적용을 위해 원산지를 결정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 기준을 사용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 (1982)

- 부품 또는 재료의 결합이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핵심 판단 기준은 수행된 작업의 범위, 부품이 원래 정체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제품의 필수적 부분이 되었는지 여부임

❖ 참고 판례: *Belcrest Linens v. United States*, 573 F. Supp. 1149 (Ct. Int'l Trade 1983), *aff'd*, 741 F.2d 1368 (Fed. Cir. 1984)

- 만약, 제조 또는 결합 과정이 사소한 수준이며, 제품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본질에 변화가 없는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542 F. Supp. 1026 (1982), *aff'd* 702 F.2d 1022 (Fed. Cir. 1983)

❖ 참고 판례: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190 F. Supp. 3d 1308 (2016)

- 법원은 실질적 변형이 발생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 기준을 검토
- 수입 후 공정이 조립에 불과한 경우, 특히 물리적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성질(character)의 변화가 발생했다고 보지 않음
- 수입 시점에서 최종 용도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용도(use)의 변화가 없다고 봄
- 조립 공정의 성격 또한 고려(조립이 단순한 수준인지, 아니면 복잡하여 개별 부품이 독립된 정체성을 잃고 새로운 물품의 구성 요소로 전환되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

- CBP는 팬이나 펌프 부품을 모터에 단순히 프레스 장착하거나 기계적으로 결합하는 수준의 조립은 실질적 변형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함
- 즉, 팬 또는 펌프 어셈블리의 원산지는 모터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이는 해당 어셈블리에서 모터가 핵심 요소로 간주되기 때문임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304126*

**사례** 대부분의 중국산 개별 부품이 세르비아로 운송된 후, 로터 서버어셈블리 및 스테이터 서버어셈블리로 제조되었고, 모터로 결합되어 최종 원심식 식기세척기용 펌프 완성

**판정** CBP는 모터가 최종 제품인 식기세척기용 펌프의 핵심이라고 판단하면서, 대부분의 부품을 중국산으로 사용했다 할지라도 로터의 자화(magnetization), 다수 부품의 공압 프레스, 자외선 접착제 경화, 유도 납땜 등의 복잡한 공정을 통해 세르비아에서 모터가 생산되었으므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를 세르비아로 판정함

관련 법령  
및 분석

- 또한, CBP는 일반적으로 전기모터의 원산지는 해당 모터의 두 가지 핵심 구성 요소인 로터와 스테이터가 제작된 국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입장을 취해왔으며, 나아가, 스테이터와 로터의 원산지 역시 각 부품의 코어가 제조된 국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여줌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N305251*

**사례** 일본에서 강철 코일로 생산한 스테이터 스택 및 로터 스택을 중국으로 수입하여 중국산 부품(폴리, 베어링, 샤프트, 엔드 캡 등)과 조립해 전기 스테퍼 모터를 생산하였으며, 이때 중국에서 수행된 공정은 스테이터 및 로터 스택 기계 가공, 도장, 코일 감기, 샤프트 및 베어링 부착, 와이어 납땜, 하우징 및 엔드 캡 결합 등임

**판정** 완성된 스테퍼 모터의 본질은 스테이터와 로터에 있으며, 나머지 부품을 조립하는 과정은 로터와 스테이터를 새로운 물품으로 실질적으로 변형시킬 만큼 복잡한 공정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스테이터 및 로터 스택이 제조된 일본을 원산로 판정

- 더불어, CBP는 조립 공정이 실질적 변형에 해당할 만큼 충분히 복잡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 국가에서 수행되는 서브어셈블리 공정을 포함한 모든 작업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303529*

**사례** 미완성 우편 요금계기 생산을 위한 주요 서브어셈블리 중 하나는 말레이시아에서 제조되었으나, 나머지 서브어셈블리들은 중국에서 제조되었고, 이들 서브어셈블리를 연결하여 최종 조립하는 과정 역시 중국에서 이루어짐

**판정** 중국에서 조립 공정뿐만 아니라 일부 서브어셈블리 또한 제조된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국에서 행해진 공정이 충분히 광범위하며 복잡한 것으로 판정하여 원산지를 중국으로 판정함

- CBP는 모터와 관련하여 스테이터 및 로터 코어가 생성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가공의 범위 역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N309707*

**사례** 대부분 중국산 부품(스테이터 코어, 로터 요크, 마그넷 와이어, 절연 시트, 하우징, 리드 와이어 하네스 등)을 사용하여 멕시코에서 최종 제품인 팬 블로어를 생산하였으며, 이때 멕시코에서 수행된 공정은 스테이터 어셈블리 및 로터 어셈블리 제작, 리드 와이어 하네스를 PCBA에 납땜, 임펠러 및 하우징 부착 등 광범위한 공정이 수행됨

**판정** CBP는 이러한 공정을 통해 기존 부품들이 개별 정체성을 상실하고, 공기 순환 기능을 갖춘 새로운 상업적 물품인 팬 블로어 어셈블리로 탈바꿈했다고 판단하여, 해당 최종 제품의 원산지를 멕시코로 판정

판정 결과

- ㉔ **시나리오 1~4** CBP는 최종 제품인 증발기 어셈블리의 원산지는 스테이터 및 로터 어셈블리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는 다시 해당 어셈블리들의 핵심 부품인 스테이터 코어와 로터 코어가 생산된 국가를 원산지로 판단하게 되므로, 각 시나리오별로 스테이터 코어와 로터 코어를 생산한 국가가 원산지인 것으로 판정함
- ㉔ **시나리오 5** 시나리오 5의 경우, 핵심 부품인 스테이터 코어와 로터 코어가 베트남에서 생산되었지만, CBP는 HQ H303529, NY N309707 사례를 인용하여 중국에서 수행된 가공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대부분의 부품이 중국산이므로, 최종 제품인 증발기 어셈블리의 원산지를 중국으로 판정함

### 결론

- ✓ **시나리오 1~4** 각각의 시나리오에 따른 원산지는 아래와 같으며, 최종적으로 중국산이 아니므로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이 아님

시나리오	판정결과	제301조 대상 여부
1	베트남산	X
2	일본산	
3	한국산	
4	태국산	

- ✓ **시나리오 5** 원산지는 중국이며,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임

### III 시사점

- CBP는 실질적 변형에 기초하여 전기모터 및 이와 유사한 제품의 원산지를 판단하는 경우, 모터의 핵심 구성 요소인 로터와 스테이터가 제작된 국가를 기준으로 하나, 이는 다시 세부적으로 로터와 스테이터의 코어가 제조된 국가를 기준으로 삼고 있음
- 다만, 시나리오 5와 같이 핵심 부품인 로터 및 스테이터 코어가 일정 국가에서 제조되었다고 할지라도 최종 제품 생산을 위한 공정이 타국에서 광범위하고 복잡할 정도로 수행된 경우에는, 해당 공정이 수행된 국가가 원산지가 될 수 있음

### IV 참고자료

- CBP Ruling HQ H319601 (2021.07.16.), <https://rulings.cbp.gov/ruling/H319601>
- CBP Ruling HQ H304126 (2020.02.13.), <https://rulings.cbp.gov/ruling/H304126>
- CBP Ruling NY N305251 (2019.08.01.), <https://rulings.cbp.gov/ruling/N305251>
- CBP Ruling HQ H303529 (2019.06.06.), <https://rulings.cbp.gov/ruling/H303529>
- CBP Ruling NY N309707 (2020.03.11.), <https://rulings.cbp.gov/ruling/N309707>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2411&num=0&edition=prelim>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Belcrest Linens v. United States (1984),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309750/belcrest-linens-v-united-states/>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
-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2016),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4327965/energizer-battery-inc-v-united-states/?q=Energizer+Battery%2C+Inc.+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4327965/energizer-battery-inc-v-united-states/?q=Energizer+Battery%2C+Inc.+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